

‘26. 7.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

김 제 시 의 회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(안)

의안 번호	2026-4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7. 13.

제안자 : 운영위원회

1. 주 문

- 김제시의회 의원의 자격 심사,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선임

- 위원 정수 : 7명
- 위원 선임 : 의장추천(1명) • 행정복지위원회(3명) • 경제도시위원회(3명)

나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

- 2026년도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
 -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
 - ※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의 위원을 사전 추천 진행
 -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의 건 의결
 - ※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윤리특별위원회 개최하여 호선

다. 임기 : 본회의 의결 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(2년간)

라.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: 의회 2층 소회의실

3. 관련법규 : [붙임1]

- 지방자치법 제65조
-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3항
-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【붙임1】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□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한다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.

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소위원회)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·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·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의원“이라 한다)
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“이라 한다)

제6조(심문)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, 직접교부,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등으로 송달할 수 있다.

③ 정보통신망이란 문자, 이메일, 카카오톡,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
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“별지 제2호서식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.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발언 및 변명) ① “심사요구의원” 또는 “심사대상의원”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심사대상의원”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(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)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8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“심사대상의원” 또는 “심사요구의원”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통고)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위임)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조정 및 추천

○ 관련근거 :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

구 분	의 원 명	추 천	비 고
행정복지 위원회			
경제도시 위원회			

2026. 7. .

김제시의회 의장 0 0 0 (서명)